

# 국가와 항쟁

사진가 이시우

## (1) 국가

- 1) 권력의 저울
- 2) 권력의 시장
- 3) 권력의 공장
- 4) 권력의 은행

## (2) 항쟁

- 1) 자기결정권
- 2) 조직력
- 3) 지배력

## 1. 공간의 지배

- ㄱ. 청야전술
- ㄴ. 조사의 복산
- ㄷ. 성동격서
- ㄹ. 점거

## 2. 시간의 지배

## 3. 권리의 지배

- ㄱ. 권력배제
- ㄴ. 권리지배의 권력화
- ㄷ. 권리의 소멸

이게 나라냐.

우리는 세월호 이후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물었다. 전 민중이 전력을 다해 역사에 던진 질문, 한 세기에 다시 찾아올까 말까한 질문, 세기적 질문이었다. 원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닌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나라를 망쳤고 그래서 선거에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 좋은 정부를 세우면 이 나라가 나라답게 될 것이다... 대선결과는 그렇게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었고 수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와중에도 국가의 본질은 과연 바뀌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라는 이 세기적 질문에 나는 답한다. “몰랐더냐. 이게 나라다”

## (1) 국 가

자본주의국가의 법은 권력과의 관계에서 4가지 계기를 통해 속성이 전환되며 국가권력을 완성한다. 첫 번째, 법은 권력의 척도, 권력의 저울이다. 두 번째 법은 권력의 척도라는 속성으로부터 수많은 권력을 매개하는 수단, 즉 지배수단으로 발전한다. 이는 마치 권력을 유통하는 시장과 같다. 세 번째, 법의 순환체계 밖에 있던 권력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은 권력을 생산, 축적하는 공장으로 발전한다. 네 번째, 권력은 법을 더 이상 매개하지 않고도 법을 초월하여 스스로를 재생산하며 독립한다. 이로서 권력으로서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권력의 은행이 된다. 이 단계에서 국가로서의 국가<sup>1)</sup>가 완성된다.

## 1) 권력의 저울

자본론이 상품분석으로부터 출발하듯 나는 권리분석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권리’란 사람이 본성적으로 누려야 할 자연권이다. 자연상태의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해서, 서로가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떼어내 공공의 인격체를 만드는데, 공공의 인격체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국가이다.<sup>2)</sup> 그러나 헤겔은 흄스 이래의 계약론자들이 주제로 삼은 자연상태 이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선 헤겔에게 ‘자연상태’란 상호적인 인정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써 각 개인들이 단순히 병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겔이 볼 때 자연상태에서 자연권(Naturrecht)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권은 권리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는 이미 타자를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논하는 상태는 이미 최소한의 상호 인정관계 속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이다.<sup>3)</sup> 즉 권리관계와 함께 자연상태는 이미 지양<sup>4)</sup>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권리는 타인을 전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상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나는 나’라고 말하는 권리와 ‘나는 우리’라고 말하는 권리로 구별된다. 이로써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 권리는 두 개의 계기와 측면을 가진 구별되는 권리로 인식된다. 구별은 차이를, 차이는 대립을, 대립은 모순을 낳는다. 그리하여 ‘나’의 권리와 ‘우리’의 권력은 서로 배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하는 곤란한 관계에 빠지게 된다. 개인과 국가, 권리와 권력사이의 모순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 이중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의 이중성은 그 자체만으로 모든 모순의 계기를 내포한 것은 아니다. 대립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관념적인 인정관계가 아니라 불평등한 차별을 일으키는 물질적 조건이다.<sup>5)</sup> 이 차별적 조건으로부터 인정투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이중성은 현실의 계기를 거쳐서야 모순으로 현실화된다.

1) 헤겔은 『법철학』에서 시민사회를 “오성국가”, “강제국가”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한 국가로서의 시민사회는 국가에서 완전해지는데 이를 “정치국가”라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비오(N. Bobbio)는 헤겔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와 대립되는 경제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초 출현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N. 보비오,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존재하는가?』, 구갑우/김영순 역음,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은 존재하는가』, (의암출판, 1992), p.58) 필자는 시민사회와 국가를 국가로서의 동일성과 구별의 관계로 보는 시각을 받아들인다. 더불어 ‘국가로서의 국가’는 국가형성의 한 계기가 아니라 모든 계기들의 종합, 통일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김영수, 「‘민’의 권리로 만들어지는 권력과 권한」, 『울산저널』, (2017-01-18); <http://www.usjournal.kr/News/87484>

3)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284

4) 헤겔이 독일어의 우수성으로 자랑한 지양(Aufheben)은 ‘폐기와 보존’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Gesammelte Werke band 11*,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78)/임석진 역, 『대논리학(1) 존재론』, (서울: 지학사, 1983), pp.103-104참조) 이는 마치 누에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말에 적당한 유비를 제공하는 단어는 ‘내려놓다’, ‘비우다’가 아닐까 생각된다. 내려놓음으로써 더 높아지고, 비움으로써 더 채울 수 있는 이중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5) 마르크스는 1870년 4월 9일 「마이어나 포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일랜드문제에 대해 “아일랜드의 노동자에게 있어서 아일랜드의 민족적 해방은 결코 추상적인 정의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회적 해방의 첫째 조건이다.”라고 쓰고 있다.(W.Z 포스터, 편집부 역, 『세계사회주의 운동사 1』, (서울: 동녘, 1987), p.85)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물건은 부동산인 토지 또는 주택이라도 좋고, 동산인 그 어떤 물건이라 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이전에는 그 어떤 물건의 소유도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아직 타인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아닌 “점유”에 해당한다. 내가 주인 없는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헤겔에 의하면 타자를 이 물건의 소유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로부터 배제당한 타인은 그 자신이 부정되고, 또 무시됨(Negiertsein)에서 회복하기 위해 나의 점유물을 훼손한다. 헤겔에 의하면 이때 물건을 훼손당한 자는 그 자신이 원래 기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즉 그는 물건을 점유할 당시에는 순전히 다른 그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타자를 배제했으나 이제 그는 목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헤겔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타자,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다시 말해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매개되어야만’ 우리들의 정체성(Identität)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 간에 배타적이면서도 인정의 필요성 때문에 또다시 각자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변증법적 관계에 의한 힘, 즉 두 가지 차원의 권력은 통합된다. 여기서의 ‘상호주관성’(Intersubjektivität)은 아직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공동생활의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법적 관계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sup>6)</sup> 헤겔은 인정관계로부터 법의 기원을 찾지만 마르크스는 관념적인 인정관계가 아니라 물질적 관계의 소외에서 법의 기원을 찾는다. 그리고 헤겔의 『법철학』이 물질적 소외관계를 은폐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한다.

예를 들어 보자. 상품소유자들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품소유권은 상품을 판매, 폐기, 변형할 수 있는 가처분권리이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결정권이다. 따라서 상품교환은 처분결정권, 자기결정권의 교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을 자각하기 전에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교환은 일어난다. 두 생산물간의 구별과 차이 때문에 동등성을 향한 교환이 일어난다. 같은 물건은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다. 구별과 차이가 없다면 교환자체가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이다. 교환의 결정은 노동생산물의 수많은 속성 중 상품이란 속성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며, 교환관계는 관계가 발생하는 즉시 그런 속성을 현상하도록 강제한다. 나만의 구체적노동의 성과이고 나만의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던 상품은 교환되는 순간, 교환가치로서, 사회적노동으로서만 표현된다.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교환가치나 사회적 노동은 나와 상대방의 것이 아닌 제3의 것이다. 그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다. 관계는 관념으로 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이 관념 속에서 나만의 사용가치는 박탈되고, 배제되며, 소외된다. 관계하는 순간 소외되는 것이다.<sup>7)</sup> 권리의 교환은 권리를 박탈한다. 권리가 실재라면 권력은 관계이다. 권력은 권리관계가 소외된 결과, 즉 소외된 권리이다. 이 소외된 권리의 표현이 법이다. 자유의지가 아닌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발생한 관계가 단결이 아닌 소외를, 지배가 아닌 피지배를 초래하는 현상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p.286-287참조

7) ‘특수이익과 공동이익간의 분열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활동이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행해지고 또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한 인간자신의 활동은 그 인간에 대해 적대적인 하나의 소외된 힘으로 되게 마련이고 인간은 이 힘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의 노예가 된다.’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64

노동분업에 의해 야기된 개인들 간의 협업을 통해 발휘되는 저 생산력은 그 협업자체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연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인 까닭에 이들 개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단결된 힘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는 하나의 소외된 힘으로서 느껴지게 되어 그 힘의 기원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이제 그 힘을 지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힘이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무대 위에서 지휘하고 있는 일련의 국면과 단계들을 경험하게 된다.<sup>8)</sup>

자유의지가 아닌 관성적 협업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지배하는 힘인 것이다. 이번엔 교환을 계약이나 계약의 실행으로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계약의 위반을 가정해보자.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 발생한 제3의 권리, 즉 권력은 나의 권리행사에 대해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위반은 공동의지에 함축된 보편적 권력인 “강제력”(Zwang)에 대립하는 개별자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계약 위반이나 범죄는 헤겔에 따르면 단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 의지의 힘의 등장을 위한 필연적인 현상이다. 헤겔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 개별자로서의 범죄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동의지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가 소홀히 해왔던 이 공동의지는 바로 자신이 형성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9)</sup> 권력 안에서 권리는 대립하며 공존한다. 대립하고 배타하면서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란 곧 모순이다. 이 같은 모순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모순은 객관화, 사물화됨으로써 해소된다. 상품교환의 영역에서 소외된 교환관계로서의 가치는 결국 화폐로 사물화 된다. 관계-소외-사물화로 요약되는 변증법적 전개는 다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근대정치에서 상품의 교환에 해당하는 관계는 개인 간의 ‘동의’이다. 모든 정당한 권위는 그 권위가 행사될 대상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칙-다른 말로 하면 개개인은 그들이 동의했었던 바에 의해서만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아래에서 근대의 세 혁명은 이루어졌다.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권력은 약탈이나 증여등의 형식으로 획득되었다. 사적소유와 상품교환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탄생은 권리의 탄생도 동반했으므로 약탈은 더 이상 권력획득의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동의’에 기초한 자기 권리의 위임이다. 근대국가의 대의제도는 ‘동의’를 기반으로 추천제에서 선거제로 발전된다. 추천에 기초한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추천을 사용하기로 한 때 합의를 했더라도 선출된 사람은 그가 권위를 행사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 권좌에 앉은 것이 아니다. 반면 선거체제에서는 시민의 동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사람들은 선출방법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이다. 만약 동의에 기반한 권력과 정치적 구속력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분명히 선거는 추천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치적 정당성과 구속의 근거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추천의 몰락과 선거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sup>10)</sup> 따라서 선거제의

8)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64

9) 헤겔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실에서 범죄현상의 대두에 의해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공동의, 즉 일반의지의 권력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 헤겔의 범죄와 처벌에 관한 연구는 Felix Herzog, *Prävention des Unrechts oder Manifestation des Rechts. Bausteine zur Überwindung des heteronom-präventiven Denkens in der Strafrechtstheorie der Moderne*, (Frankfurt/M., Bern, Wien, 1987) 과 Kurt Seelmann, *Anerkennungsverlust und Selbstsubsumtion Hegels Strafrechtstheorien*, (Freiburg, München, 1995)를 참조;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p.290-291

10) Bernard Manin,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버나드 마넌, 곽준혁 역, 『선거는 민주적인가-현대대의민주주의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 후마니타스, 2004), p.113참조

핵심은 대의제가 아니라 지배에의 자발적 복종에 있다. 동의란 자기권리의 포기과 공동권력에의 구속, 복종을 의미한다. 자발적동의란 자발적복종의 다른 이름이다. 동의하는 순간 자기결정을 지배하기는커녕 지배당하는 소외가 발생한다.<sup>11)</sup> 권력의 수단은 강제와 동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동의가 내면화된 강제라는 점에서 권력의 본질은 오직 강제이다. 즉 동의 자체가 권리의 소외됨, 즉, 소외된 권리이다. 투표하는 순간만 시민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이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 주권자는 그 투표에 의해 소외된다. 임금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소유하게 해주고, 자신은 소유를 상실하듯이, 선거의 결과 민중은 지배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양하고 자신은 권리를 상실한다. 정치에서 소외된 관계로서의 권리는 표로서 사물화 된다.

권리의 관계는 권리의 소외를 초래하고, 소외된 권리, 즉 권력과 권리사이엔 적대적으로 대립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극과 상생의 모순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소외된 권리, 즉 권력은 표로서 사물화된 자기표현을 얻는다. 대의제에서 권력은 표로서 측정된다. 화폐와 투표는 권력의 척도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선거에서 불법인 대표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물물교환에서 화폐교환으로의 이행이 상품교환을 우연적인 것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듯이 추첨제에서 선거제로의 이행도 권력이양을 우연적인 것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근대경제권력에서의 척도가 화폐이듯, 근대대의정치권력에서의 척도는 표이다. 수많은 영역에서 권력은 자기 척도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의 권력의 척도는 법이다. 소외된 권리로서의 국가권력은 법으로서 대상화·사물화 된다. 척도란 질이면서 양이다. 질은 규정이고 규정은 한계이다. 따라서 법은 권리와 권력을 규정하며, 그 규정은 곧 한계를 의미한다. 또한 법은 권력의 양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형량으로 계량된다. 저울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듯, 권리의 척도가 정립됨으로써 권리의 매개와 교환은 급속도로 보편화된다. 권력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 2) 권력의 시장

소외된 권리인 국가권력은 그 척도인 법을 통해 권리의 주체들을 매개한다. 법이 권리주체들을 매개시킬 수 있는 것은 역으로 권력의 척도이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사적소유가 전면화 된 시민사회란 권리가 전면화 된 사회의 동의어이다. 이제 권리와 권력은 법으로 표현된다. 하나의 법은 하나의 권력이다. 다른 법은 또 하나의 권력이다. 이제 법은 하나와 다수의 관계로 나타난다. 즉 하나와 다수의 관계로 배척하며 또 견인한다.<sup>12)</sup> 하나와 다수의 관계에서는 계약(민사)으로, 하나와 전체의 관계에서는 법(형사)으로 발전한다. 이로서 형법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권력을 적용할 수 있는 권력의 척도이자, 권력의 매개체, 지배통치의 수단으로

11) 소외된 권력관계는 권력의식을 만들고, 그런 권력의식이 진리나 법칙으로서 사람들에게 강요된다. “예를 들어 왕권과 귀족 및 부르주아가 서로 지배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고 그리하여 지배권이 나눠져 있는 시대나 국가에서는 이른바 권력분립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등장하여 ‘영원한 법칙’으로서 표명될 것이다.”(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83)

12) 하나와 다수의 배척과 견인에 대한 개념은 다음을 참조. 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Gesammelte Werke band 11*,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78)/임석진 역, 『대논리학(1) 존재론』, (서울: 지학사, 1983), pp.176-184참조

등장한다. 계약으로서의 법은 다수의 권리와 권력을 중계하는 역할에 그친다. 이는 [권리-법-권리]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 순환관계에서 법은 권리와 권력을 매개하고 사라진다. 어떤 양적 증가도 없이, 법은 다만 권리를 위해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은 다수가 아닌 국민전체의 권리와 권력에 선행하는 규범과 척도로서 등장한다. ‘다수’에 존재하던 우연성은 ‘전체’에 이르면 필연성으로 전화된다. 법은 상호권리를 중재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강제하는 소외된 권리로, 권력으로 전환된다. 이는 [법1-권리-법2]로 도식화할 수 있다. 이 도식에서 법1과 법2는 다름의 표현이 아니라 증가의 표현이다. 법은 권리에 대한 강제와 지배를 통해 강화된다. 어떠한 권리도 법의 한도, 법의 척도를 넘지 않는다. 개인의 복수나 국가의 처벌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법은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강제하는 것이다. 이 강제가 법에 의한 지배이다. 법치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법이란 “인간 자신의 활동이 인간에 대해 대립하는 낯선 힘, 인간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인간을 굴복시키는 힘으로의 전화”<sup>13)</sup>이자, “인격적 힘들(관계들)이 사물적인 힘들로 전화”<sup>14)</sup>된 소외된 권리, 즉 권력의 표현에 불과하다. 계급관계, 지배관계가 소외되고 은폐되는 물신성 때문에 법은 계급중립적인 제3의 실체인 것처럼 둔갑한다. 이같은 속성이 법적기구인 국가로 하여금 계급지배의 수단으로 역할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sup>15)</sup>

법은 권력을 매개하지만 여전히 권력의 척도로서의 속성도 유지하고 있다. 법이 권력의 척도, 한도를 넘어설 때 질에도 변화가 온다. 장발장처럼 약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벌 봐주기처럼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내려질 때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법에 내재한 소외된 불평등관계를 직감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권력의 척도이자 매개체라는 질적 규정에 변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형법의 경계를 넘어 법 밖에 위치하는 권력과 관계할 때 법은 자기한도를 초과하고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 3) 권력의 공장

권력의 척도로서의 법은 우연적으로만 권력을 법에 의해 매개한다. 그러나 법과 권력이 하나와 다수, 하나와 전체의 관계로 발전하면 일종의 순환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로서 법에 의한 권리와 권력의 매개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법의 지배가 확립된다. 그러나 법의 순환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법의 예외상태, 즉 법 밖에서의 권력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법 밖에 있다. 형법의 상위단계인 헌법을 통해 국가는 비로소 구체적 현실성을 지니게 되는데,<sup>16)</sup> 제헌권력은 법의 예외문제를 잘 보여준다. 헌법이 있기 전 헌법을 만든 헌법제정 주체인 주권인민<sup>17)</sup>은 아직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헌법을 제정하므로 법의 합법성이

13) Karl Marx, *The German Ideolog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9)/『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박종철출판사, 1991), p.214

14) Karl Marx, *The German Ideolog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9)/『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박종철출판사, 1991), p.246

15) 박승호,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국가물신주의 비판」, 『사회경제평론』, 제29권 2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p.64참조

16) 정미라, 「해결에 있어서 국가의 이념」, 『대동철학』22집, (대동철학회, 2003.9), p.16

17) 주권인민은 대부분 국가의 헌법전문에 주어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 국민”으로, 미국헌법에는 “우리 합중국 인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으로 등장한

부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권인민은 법 밖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다.<sup>18)</sup> 인민의 제한권력이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그러나 그 피조물에 전적으로 복속되지는 않는 조물주(demiurge)의 세속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sup>19)</sup> 프랑스혁명의 이론가 시에예스(E. J. Sieyès)의 표현에 따르면 “인민은 헌법에 복속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sup>20)</sup>

헌법을 만든 제한권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입헌권력<sup>21)</sup>도 법 밖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단 입헌권력은 헌법이 수립된 뒤이므로 법 안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칼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권자는 법밖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법안에 있는 자로서, 즉 헌법을 완전히 효력정지 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Entscheiden)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다.” 헌법 밖에 있는 ‘예외상태’는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오직 국가권력의 담당자, 즉 주권자만이 예외상태를 결정함으로써 법의 경계를 규정한다.<sup>22)</sup> 슈미트의 사상은 군주권은 “최종적인 의지 결정을 지닌 권력”이라는 헤겔의 정의와 유사성을 갖는다.<sup>23)</sup> 이같은 법 밖의 권력은 개별권리의 주체가 공동권력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 잉여권력, 초과권력이다. 사형집행권이란 시민사회의 국가 안에서는 최고 권력이지만, “사면권”(Begnadigungsrecht)이라는 초법적인 권한, 즉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하겠다.<sup>24)</sup> 주권자는 법의 밖에서 권력행사를 결정

---

다. 1790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민족(nation)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인민이 아닌 민족을 제한의 주체로 삼았다.

18) 미국의 “우리 합중국 인민”을 예로 들어 보자. 1787년 9월 8일 <헌법집필위원회>(Committee of Style)가 제출한 전문초안은 “WE THE PEOPLE of the States of (각13개 주 이름)”으로 제한권력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었다.(Raymond B. Marcin, “‘Posterity’ in the Preamble and a Positivist Pro-Life Position.”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38 Am. J. Juris. 273), p.284) 미국헌법제정 이전에는 각 주 단위의 인민만 존재하였지, 고유명사로서의 “합중국인민”은 정치적으로도 실정법상으로도 부재하였던 것이다. 이는 헌정위기 또는 중단상황에서 “미합중국 인민”이 존재할 수 있는가하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며, 미국 헌정사에서 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법리가 아닌 (남북)전쟁을 통해 결정되어진다.(Akhil Reed Amar, *America’s Constitution: A Biography*. (Random House, 2005), pp.21-39); 김성호, 「헌법제정의 정치철학-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42집3호, (한국정치학회, 2008.9), p.8참조

19) Ernst Wolfgang Bökenförde, *Staat, Verfassung, Demokratie: Studien zur Verfassungstheorie und zum Verfassungsrecht*, (Suhrkamp Verlag, 1991), pp.90-112; 김성호, 「헌법제정의 정치철학-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42집3호, (한국정치학회, 2008.9), p.8

20) Emmanuel-Joseph Sieyès, *What Is the Third Estate?* (1789), (Pall Mall, 1963), p.126

21) 허영은 전자를 “헌법제정권력”, “창조한 권력” 또는 “형성하는 권력”으로, 후자를 “창조된 권력” 또는 “형성된 권력”으로 번역하고 있다.(허영, 『헌법이론과 헌법』(上), (서울: 박영사, 1988), p.49)

22)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2판, (Berlin: Duncker & Humblot, 1934)/김항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p.18,22,25,16참조

23)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Frankfurt a. M., 1980), p.273; 정미라, 「마르크스 『헤겔 국법론 비판』-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논집』제48집, (서강대학교철학연구소, 2017.2), p.187. ‘결정’에 대해 헤겔과 슈미트는 다른 비중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겠다. 헤겔의 결정은 형식적인 것이다. 헤겔에 의하면 군주의 결정은 결정된다는 것만이 중요하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슈미트의 ‘결정’은 그만의 독창적인 개념으로서 주권의 본질은 강제나 지배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에 있다고 할 정도로 강한 의미부여를 한다.

24) 『법철학』에서는 시민사회에서 국가로의 이행이 ‘직업단체’(Korporation)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에나의 실재철학』에서의 이행은 바로 이 ‘사면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사면권은 국가원수에 게만 귀속되는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이 권한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민법적, 형사법적 사법제도의 영역을 초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Igor Primoratz,

하고, 그것을 다시 법을 통해 합법화시킨다. 법으로 합법화되지 않으면 주권자는 헌법위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법보다 한발 앞서 나감으로써 법 밖에 선다.

계엄권의 예를 들어보자. 이승만이 제주4.3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계엄령을 선포하지만 당시에는 계엄법이 없었으므로 이는 범위반임이 명백했다. 그러나 계엄령은 하달되었고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 뒤늦게 문제될 것을 의식하여 계엄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소급입법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불법은 단 한번도 탄핵되지 않았다. 계엄법이 만들어진 후, 대통령의 계엄권은 합법화되었다. 법 밖의 권력이 법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현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단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헌법77조 5항에 의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탄핵된다.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이란 선택은 쉽지 않은 것임에 분명하다. 이제 계엄권은 법안에 갇힌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다시 한 번 법의 지배를 허물 수 있는 틈새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작은 틈새면 충분히 권력은 법 밖에 설 수 있게 된다. 계엄법 11조 2항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평시로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지연시키면 계엄은 지속된다. 즉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은 이 미세조항 하나로 간단히 무력화된다. 이 조항하나로 대통령은 다시 법 밖에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결정권을 확보한다. 면밀히 보면 계엄법 11조 2항은 헌법77조 5항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상의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는 이행강제력의 퇴색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실현을 국무회의의 심의에 기속(羈束)시키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권력은 법의 지배를 무력화하고 권력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입법능력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으로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법률 전체가 법률로부터 예외인 것처럼 파악되기도 한다.<sup>25)</sup> 그럼으로써 권력을 재생산하고 축적시킬 수 있는 체계도 바로 법인 것이다.

이로서 법은 잉여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장이 된다. 잉여권력은 법을 통해 재생산, 축적된다. 이는 [권력1-법-권력2]로 도식화할 수 있다. 권력의 시장, 권력의 매개체로서 [법1-권력-법2]의 순환은 법을 강화시키는 회로이고, [권력1-법-권력2]의 순환은 권력을 강화시키는 회로이다. 전자의 순환회로에서 축적되는 것은 권위인데 비해, 후자의 순환회로에서 축적되는 것은 권력이다. 전자는 법치(法治), 후자는 인치(人治)가 된다. 이로서 법은 권력의 저울(척도)이자 시장(매개체)이라는 규정에서, 잉여권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질적인 변신을 한다.

---

*Banquos Geist: Hegels Theorie der Strafe*, in Hegel Studien. Beiheft 29.(Bonn. 1986), p.61: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294인용

25) 마르크스는 라인주의 삼림벌채 문제를 다루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람들은 심지어 법률 전체가 법률로부터의 예외라고 파악하였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예외적인 규정이 법률에서 허용 가능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어떤 하나의 법률로부터의 예외(eine Exzeption von einem Gesetz)가 아니라 법률로부터의 예외(eine Exzeption von Gesetz)가 다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입법자가 있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주의회의 활동은 때맞추어 약삭빠르게 끼어들고 고치고 보충한다. 그리하여 주의회 활동은 법이 사적 이해에게 법률을 제정하게 했던 곳에서 사적이해로 하여금 법에게 법률을 제정하게끔 한다.'(마르크스, 전태국 외 공역,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비판과 언론』, (부산: 열음사, 1996), p.237,240,241)

#### 4) 권력의 은행

권력의 척도로서 법은, 권력의 매개체로, 권력의 공장으로 발전해왔지만 이제 권력은 더 이상 법을 통하지 않고 권력 스스로 축적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법은 권력의 표현이었지만 이제 권력은 더 이상 법이란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권력은 법의 경계를 정해 법이 침범할 수 없는, 권력이 한 없이 자유로운 지상천국을 만든다. 통치자금, 통치행위의 이름으로 법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만들어진다.

법을 초월한 국가권력은 [권력1-권력2]의 순환을 갖는다. 법의 매개 없이도 권력을 재생산하는 자생권력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마치 생산과정을 매개로 축적되는 생산자본[자본1-생산-자본2]이, 생산의 매개 없이도 이자를 낳는 자본, 돈이 돈을 낳는 자본[자본1-자본2]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다.

나폴레옹 3세는 대통령이란 최고권력에 있었으면서, 쿠데타를 통해 다시 황제가 된다. 이는 권력의 독립적 축적체계가 완성되면 공화정과 전제정의 경계는 거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헤겔에 의하면 사면권으로 대변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고의 권력은 범죄라는 죄악 그 자체까지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공동체”(Gemeinwesen)의 권력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자체의 권력을 헤겔은 현존하는 전체(Ganze), 다시 말해서 “생동하는 국민”(Das lebendige Volk)<sup>26)</sup>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사회적, 국가적 보편성을 대변하던 각종 법의 형식을 띤 권력들은 이전 구체적이며 또 스스로를 인식하는 통합된 국민의 권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생동하는 국민의 권력은, 바꾸어 말하면, 이제까지 살펴본 바 있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들의 형상으로 나타난 공동 권력, 즉 국가 권력 그 자체이다. 사형수에게 다시금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시민사회의 국가라는 영역을 초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의 특수하고도 고유한 영역을 보여준다. 즉, 헤겔은 사면권에 의해서 비로소 가시화된 국가의 영역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라고 보았고, 이를 『법철학』에서는 “정치국가”(Politischer Staat)<sup>27)</sup>라고 부르면서, 국헌, 입법, 외교 그리고 국방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헤겔의 국가에서 우리는 권력의 척도이자 권력의 매개체이자 권력의 공장을 거쳐 온 국가가 어떻게 완전한 자유의지의 통일체로 둔갑하는지를 본다. 그러나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과 자유의 관계로 은폐한 상품교환, 사적 소유는 다름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한 본원적 축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헤겔은 개별자가 자유의지의 실현인 국가 속에서 받아들이는 인륜적 정조를 “신뢰”로 규정했다.<sup>28)</sup> 자본주의 초기 국가는 바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신용체계, 즉 국가

26) *Jenaer Realphilosophie. Die Vorlesungen von 1805/06. Philosophie des Geistes, in G.W.F. Hegel, Frühe politische Systeme*, hg. u. kommentiert von Gerhard Göhler(Frankfurt/M., Berlin, Wien, 1974), p.256;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294

27)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oder Naturrechts und Staatswissenschaft im Grundrisse (1820/21)*, hg. von Eva Moldenhauer und Karl Markus Michel(Frankfurt/M., 1970), §267;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295

28) “이러한 정조는 신뢰인데 …, 나의 실체적이고 고유한 이해가 개별자로서 나에 대한 관계 속에 있는 타자의 목적과 이해 속에서 보존된다는 의식, 따라서 이러한 타자가 직접적으로 더 이상 나에게 타자가 아니며 나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자유롭다.”(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Rechtsphilosophie)*, in: *Werke in zwanzig Bänden*, Bd. 7, Frankfurt a. M. 1970, 268쪽; 정미라, 「헤겔에 있어서 국가의 이념」, 『대동철학』22집, (대동철학회, 2003.9), p.12)

부채를 발행하여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성사시켰다.

공공신용체계, 즉 국채는 국가의 양도를 뜻하는 것인바 자본주의 시대의 중심적 특징이 된다. 어떤 나라의 빛이 클수록 그 나라는 부유한 나라라는 주장이 근대에 나타나게 된다...국채는 자본의 신앙이 된다. 그리하여 국채의 성립과 함께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로 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국채에 대한 불신이다.<sup>29)</sup>

국채에 대한 신앙은 헤겔이 국가의 완성에서 보았던 '신뢰'에 근거한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에 속하면서도 국가를 믿는다. 국가가 물질 토대 뿐 아니라 이념까지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법에 대한 논리전개는 권리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권력의 척도와 권력의 매개체를 거쳐 권력의 공장과 권력의 은행의 순서로 이루어졌지만 사적소유로부터 촉발된 권리의식의 출현은 국가권력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논리와는 반대로 역사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권리의식이 생겨났다. 국가권력의 자기운동에 의해 시민사회가 탄생하고 시민사회의 '권리'가 탄생했다. 시민사회를 국가의 한 계기, 한 측면으로 파악한 헤겔은 무의식적으로 이같은 진리에 접근했던 것이다. 자본주의국가는 자기 순환하는 닫힌 구조를 형성하면서 영원한 이념인 것처럼 착각되고 불평등의 소외된 관계는 은폐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를 계급지배의 수단만으로 보는 것은 실천상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 즉 목적으로서의 국가이다. 따라서 지배주체만 바뀌면, 즉 노동자국가가 되면 국가를 수단으로 노동자적 지배를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sup>30)</sup>은 마르크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테제인 국가소멸론<sup>31)</sup>과 불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앞서 분석한 4단계와 계기의 발전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의되어야 한다. "국가는 계급 지배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미시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소규모지역공동체를 통한 국가권력과 국제패권에 대한 극복노력은 전적으로 가치 있다. 그러나 이들 진지한 운동이 국가권력과 국제패권체계에 극복이라는 방향을 상실할 때는 가차없이 공상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시적인 소외조차도 그것은 거시권력이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권인민은 세계적 정세에 주목하며 전국적인 항쟁과 혁명을 호출하게 된다.

## (2) 항 쟁

권리의 이중성은 항쟁주체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물질토대에 기초해 있지 않다면 '나'와 '우리'는 자유의지의 더욱 고양된 통일이 된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개인들 간의 협업자체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sup>32)</sup>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교환관

29) Karl Marx, 김수행 역, 『자본론』1(하), (서울: 비봉출판사, 1994), pp.948-949

30) 마르크스는 「고타강령초안 비판」에서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국가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환을 겪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국가기능과 유사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이 거기에 남아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과학적으로만 대답할 수 있으며, 인민이라는 말에다 국가라는 말을 수천번 결합하여도 벼룩이 뿜 만큼도 문제에 근접하지는 못한다"(K. Marx, 「고타강령초안 비판」(1875),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1), p.385)

31) 레닌, 문성원·안규남 옮김, 『국가와 혁명』(1917), (돌베개, 1992)

32)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64

계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 개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진행된 본원적축적의 결과,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평등한 상태를 이미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소외된 힘을 만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주의국가는 부분적인 수술이나 개조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유기체이다. 국가권력을 창출한 주권의 주인이자 제한권력인 주권인민은 자유의지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정체성을 재 정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 관계는 소외가 아닌 단결로 나타난다. 그러나 진정한 단결은 의지만이 아니라 높은 생산력의 발전을 요구한다. 주권인민의 정체성은 물질적 힘을 인간의 지배아래 굴복시키지 않고는 소외된 권리, 권력의 노예가 되는 길을 피할 수 없다.

노동분업을 통한 인격적 힘(관계)의 물질적 힘으로의 전환은 그 전환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머릿속에서 몰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각 사람들이 이들 물질적 힘을 다시금 자신들 아래 굴복시키고 그 노동분업을 폐지함에 의해서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공동체내에서만 비로소 인격적 자유는 가능해진다. 이 공동체를 대신했던 지금까지의 국가 따위에 있어서는 지배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들이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 경우에만 인격적 자유가 존재했다...때문에 그것은 피지배계급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환상적인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족쇄였다. 참된 현실적인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들은 그들의 결사 속에서 그 결사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sup>33)</sup>

'이게 월급이냐', '이게 회사냐', '이게 학교냐' 라는 국지적인 질문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은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답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핵심은 자유의지를 가능케 할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의 교체가 아닌 국가권력자체에 대한 교체가 필연임을 밝힌다.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서 등장한 국가파괴테제가 그것이다. 김영수는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한다는 것은 국가 장치의 완전한 파괴 및 대체를 의미하기보다 인민의 권리를 권력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국가권력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새로운 관료와 관료기구, 새로운 군인과 군대구조, 새로운 통치인력과 통치구조 등이 인민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시키고, 나아가 국가를 소멸시켜 나가는 디딤돌인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모든 힘이 인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민과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sup>34)</sup>

이는 제한권력을 수립하고자 했던 주권인민들 앞에 항상 던져지는 고민이다. 낡은 국가권력의 지배에 거부하지만 새로운 공동체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따라서 항쟁은 물신화된 국가권력의 허상을 깨고 개인들의 권리관계에 입각한 체계를 건설하는 시작이다. 또한 항쟁은 소외된 권리, 즉 권력중심이 아닌 자유의지에 입각한 권리중심의 관계를 수립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sup>35)</sup>

33)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109-110

34)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20

35) 권력은 권리를 배제하거나 대상화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인민보다 우위에 위치하였다. 물론 인민은 권력의 힘에 대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복종의지를 전제로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전복된 경우에는 권력의 힘을 자신의 권리로 끌어들인다.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맺는 형식과 내용이 '권력 중심의 관계'에서 '권리 중심의 관계'로 전이된다.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9)

이는 항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항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항쟁은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이며, 점진적이지 아니라 급진적이며,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항쟁권력은 첫 번째, 자유의지, 즉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소외가 아닌 단결은 조직력의 형태로 등장한다. 조직력은 질이자 양이다. 세 번째 조직력은 힘이므로 힘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며, 대상에 대한 지배력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지배와 시간에 대한 지배를 요청한다. 항쟁주체의 지배력은 권력에 대한 권리의 지배력이다. 권리는 권력을 배제하거나 권리를 권력화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를 소멸시키는 조건을 마련한다. 마침내 자본주의의 유산인 권리는 국가의 소멸과 함께 현저히 약화된다. 그리고 권리지배의 완성과 함께 권리도 소멸한다.

## 1) 자기결정권

항쟁은 소외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소외된 권리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소외된 권리가 토대로 하고 있는 물적조건은 변한 것이 없으므로 소외된 권리를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권리도 아니다. 권리의 여러 속성-소유권, 인권-중 항쟁에서 부각되는 권리는 결정권이다. 결단을 하면서 항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쟁이 지속되는 동안 권리는 국지적, 일시적으로 소외를 거부한 권리, 자유의지와 그에 기반한 권리가 된다. 소외된 권리는 복잡성과 은폐성을 띠지만 자유의지로서의 권리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항쟁은 질적측면에서 보면 '주체'의 생성과 발전문제이다. 주체(Subject)란 단어는 Sub(아래에)-ject(던져지다)란 합성어이다. 발아래 던져진 존재란 뜻에서 근대이전, 이 단어는 '피조물', '하인'이란 뜻으로 통용되었다. 남의 강제에 의해 던져진 수동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근대를 전후하여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 '주인', '주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남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민중의 삶 속에 자기를 던지는 존재는 이미 주인이다. 던져진다는 형식은 동일하나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경우 반전과 비약이 일어난다.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는 자야말로 대장부라는 백범의 비유가 이에 적절하다. 주체성의 척도, 민중권력의 척도는 자기결정권이다. 토론보다 결정이며, 준비보다 결단이다. 토론은 전원참여, 전원발언, 전원실천의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sup>36)</sup> 위기의 순간에 '토론만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은 인식과 실천사이의 간격이 발생한다. 그러나 단행합일(斷行合一), 즉 결단과 실천사이엔 간격이 없거나 작다. 수동적 동의, 소외된 동의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이 자기결단이다. 항쟁기는 소외된 권리와 자유의지로서의 권리가, 권력과 자기결정권이 투쟁하는 시기이다.

## 2) 조직력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들의 관계는 소외가 아닌 단결을 이룬다. 단결은 조직으로, 조직의 본질적 관계는 힘으로 발현된다. 발현된 힘은 조직력으로 드러난다. 조직력은 질이자 양이다. 권

36) 권리중심관계를 권력구조에 반영하고자 했던 시도로 만델라를 들 수 있는데 만델라 리더십의 특성은 "하의상달, 상의하달, 토론 의무화,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Karl Von Holdt, *Transition From Below*, (Pitermaritzburg: University of Natal Press, 2003), pp.3-10)

리주체들의 단결의 척도가 자기결정권이라면 조직력은 이 척도에 양이 더해진 것이다. 항쟁조직의 양은 상대인 공권력과 비례관계로 결정된다. 공권력을 이루는 두 축은 군대와 경찰이다. 한국 경찰은 11만이지만 이중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력은 의경포함 3만이다. 연좌시위 해산에 2명, 폭력시위 해산에 5명의 경찰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위대가 1만 5천을 넘으면 공권력으로서의 양적한계가 시작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은 질을 고양시킨다. 강도 높은 진압훈련과 군대의 무기에 해당하는 진압장비를 도입한다. 질적으로 강화된 경찰력은 수적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예화 되더라도 10만명 이상, 100만명이 되면 경찰력은 한계에 이른다. 계엄으로 군대가 동원되기 전까지 항쟁주체의 조직력은 양적측면에서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항쟁의 단계에서 비폭력이나 폭력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항쟁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근거는 형식이다. 항쟁의 형식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형식은 내용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의 구조이다.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고착된 인식이 여론을 분열시킨다. 문제는 조직력이다. 조직력이야말로 대립하는 듯한 폭력과 비폭력의 근거이자 토대이다. 조직화된 비폭력은 폭력보다 강하며, 조직화된 폭력은 비폭력보다 평화적이다. 조직화된 비폭력이 즉흥적 폭력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는 촛불항쟁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직화된 비폭력이라도 공권력이 굴복하지 않는 한 한계에 도달한다. 그에 대한 답이 폭력이라면 맞다. 그러나 수세적 폭력은 발전이 아닌 퇴보이다. 조직화된 폭력만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폭력이 비폭력보다 평화적이란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폭력으로의 발전은 점진이 아니라 비약이다. 점진은 자연발생적이다. 그러나 비약은 과학적이다. 항쟁의 과학은 바로 이 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소외된 권리는 피지배를 초래했지만 단결된 권리는 지배를 실현시킨다. 단결된 권리는 아직 권리체계를 건설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지배권력의 포위 하에 있기 때문이다. 단결된 권리는 단결된 지배력으로 나타나며, 지배력 역시 권력인 점에선 동일하다. 지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조직력은 지배권력을 대상으로 맞설 때 지배력으로 타나난다. 지배권력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가 조직력의 발전 단계를 결정한다.

‘Order’는 ‘요청’, ‘명령’, ‘질서’등 여러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 말을 힘, 즉 지배력의 발전단계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요청’은 기존의 법질서의 틀에서 위임된 권력에게 소극적 힘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명령’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위임된 권력자로부터 권력을 환수하는 적극적 지배를 행사하는 단계이다. ‘질서’는 권력의 환수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권력이 요구하는 체제를 내면화시키는 단계이다. 질서란 외형적인 강제가 없이도 권력이 행사되는 내면화된 권력이다. 이를 ORDER1(요청), ORDER2(명령), ORDER3(질서)라고 명명하자. 필자는 항쟁을 정권교체로, 혁명을 질서교체로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2단계인 ‘명령’이 항쟁, 3단계인 ‘질서’가 혁명이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서 항쟁은 혁명으로 이행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민중총궐기는 1년간 ORDER1(요청)단계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6년 11월 12일 정오까지 박근혜하야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ORDER2(명령)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후 ‘국민의 명령’이란 개념이 순식간에 퍼졌고, 누구도 낮설어하지 않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로서 항쟁주체는 ‘요청자’에서 ‘명령자’로 지위가 바뀌었다. 2단계의 과제는 낡은 법질서의 집행자인 공권력을 강제·지배하는 것이다. 이로서 자기결정권으로 단결한 항쟁조직은 명령자의 지위에 맞는 지배력을 갖춰야 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 3) 지배력

#### 1. 공간의 지배

주권은 공간의 지배를 통해 행사된다. 전국적 차원의 공간지배는 영토로 조직화 된다. 영토의 뇌에 해당하는 수도, 수도의 중심인 청와대는 주권의 핵이다. 이 핵을 떠받치는 권력기관들은 제도와 법을 집행한다. 권력기관들 역시 건물과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공간 지배의 형식에는 점거와 관할이 있다. 점거가 공간지배의 출발이자 토대라면 관할은 공간지배의 창조이자 완성이다. 민중의 힘이 커짐에 따라 피지배적 공간은 저항공간으로, 저항공간은 지배공간으로 변모한다. 예를들어보자. 세종로의 이순신동상은 1968년 김종필이 총재를 맡은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에 박정희가 돈을 내 세운 대표적 국가주의시대 조형물이다. 김종필이 낸 돈으로는 덕수궁의 세종대왕상을 만들었다. 세종로는 집회시위가 불허되는 지배권력의 공간이었고 이순신장군상은 그 상징이었다. 박정희시대를 상징하는 이순신동상이 2016년 민중총궐기시 청와대 포위작전인 학익진의 사령관으로 바뀌어 포스터에 등장했다. 공간의 내용이 뒤집어졌다. 지배공간에 대한 저항을 넘어 민중이 공간의 지배를 상상하고 연습하기 시작했다. 공간의 지배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항쟁은 일종의 전술이다. 따라서 항쟁에서의 공간의 지배는 전술을 통해 발현된다. 촛불항쟁의 사례를 통해 전술을 재구성해보자.

#### ㄱ. 청야전술 (질서의존적)

초기 항쟁지도부가 실행한 전략을 다양한 청야전술로 묶어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9일의 ‘학익진’은 청와대를, ‘대동하야지도’는 전국을 무대로 청와대를 고립시키는 전술이었다. 박근혜에게 정치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술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항쟁의 본질인 공간의 지배란 측면에서 보면 청야전술은 청와대에 집결한 ‘공권력 고립시키기’로 해석할 수 있다. 공권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청와대로 병력을 압축배치 했다. 그러나 항쟁지도부는 공간의 지배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11월 19일 오후 법원에서 창성동정부청사 별관과 삼청로 행진허용결정이 났고 경찰저지선도 후퇴했지만 지도부측은 일몰 때까지 기존의 예정된 집회를 마치느라 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했다. 물론 1주후에 이런 오류는 바로 잡혔다. 그러나 이번엔 청운동에서 창의문로로 가는 길을 차단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집결한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은 삼청동을 통과하는 북악산길과 자하문 길이었다. 이들 퇴로가 막히면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다. 경찰은 최대한 고립을 면하기 위해 처절히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자하문 방향의 경복고까지, 삼청동 총리공관 앞까지 포위가 완성되어야 경찰력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었다. 청운동진출이 허용된 후 12월 10일 이같은 상황이 도래했다. 경복고에서 청운동까지 길 양편으로 설치됐던 2렬차벽이 1렬차벽으로 축소된 것이다. 경복고까지 시민들이 가득 채워지면 경찰은 이 방면으로는 기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방송차를 청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집회를 할 뿐 경복고 방면은 그야말로 공백상태가 되었다. 경찰차벽 배치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차벽배치가 유지된다면, 총리공관삼거리나 삼청공원사거리만 막으면 경찰력의 기동은 불가능해진다.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청야전술은 실패다. 따라서 청야를 실현할 진형, 즉 학익진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형만으로 청야가 완성되진 않는다. 세부적으로 다양하고 적절한 전법이 요구된다. 청야전술은 질서의존적 전술이다. 연속 촛불문화제 또한 전형적인 청야전술이다. 날마다 규모가 작더라도 집회가 이어졌으므로 경찰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압병력이 휴식없이 계속 동원되면 피로도가 가중, 누적된다. 청야전술은 법과 질서를 인정한 상태에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경찰력을 고착시키는 전술인 것이다. 또한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강한전선을 약한전선으로 이완시키는 전술이다.

## L. 조사의 복산(질서주도적)

조사의 복산이란 고사는 진나라군대에 고립된 알여장군을 구하기 위해 조사라는 세금징수원이 왕의 허락을 받아 복산정상에 병력을 배치하여 진나라군대를 섬멸한 이야기이다. 이 고사의 교훈은 '상대가 만들어 놓은 싸움판에 끌려들어가지 말고, 내가 만든 싸움판에 상대가 끌려오도록 하라'는 것이다. 청야전술이 질서의존적이라면 조사의 복산전술은 질서주도적이라 할 수 있다. 백만촛불의 몸통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 분화가 시작된다. 이 분화의 초기 단계 모든 개별전술은 청와대주변 촛불이라는 몸통을 벗어나선 안된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 머물러서도 안된다. 아주 조심스럽게 시민들의 동의를 확인해가며 새로운 공간을 지배하기 위한 시도를 행해야 한다. 조사의 복산전술은 촛불에 의해 청와대가 포위된 순간을 전제로 한다. 다른 시간대라면 이 전술은 무조건 실패한다. 전농의 농기계상경투쟁도, 민노총의 11월 30일 총파업 시 재벌건물행진도 가장 조직적인 단체의 행동이었지만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바로 이 시간차 때문이다. 백만촛불에 의해 경찰력의 기동이 불가능한 시간에만 이들단체의 행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산전술을 통해서 촛불은 진화할 수 있다. 여기서 진화란 몸통을 유지한 분화이다. 청와대를 제외한 박근혜부역자들의 '권력공간포위', '부역기관포위'라는 개념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 한번 개념이 만들어지면 다른 권력공간으로의 확장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고 쉬운 연습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었다. 광화문에는 정부청사와 외교부건물이 있고 미대사관이 있다. 박근혜는 고립상태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와 미국의 배후하에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박근혜권력이 작동하니까 박근혜가 계속 대통령행세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일군사보호협정 강행을 규탄하며 '외교부포위'를 시도하는 것이다. 정부청사와 달리 외교부건물은 지금까지 한번도 차벽이 설치되지 않았다. 만약 평일이 라면 한걸음 더 나아가 집단민원제기 같은 준법투쟁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들면 10만명이 줄을 서서 민원실(민원실은 다른 곳에 있다)을 찾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외교부 포위가 될 것이다. '부역기관포위'를 촛불과 동시에 진행하면 경찰력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경찰력이 금방 한계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촛불에 포위되어 청와대구역에 고립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산전술의 핵심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서 상대를 약하게 할 요소를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명분과 공간적 유리함, 인원수의 우위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대상이 나타났다. 새누리당사였다. 새누리당의 경우 해체의 명분은 충분했고, 우리에게 약점은 촛불의 몸통으로부터 멀다는 것이었다. 이때 조직력이 높은 단위가 있으면 해결된다. 몸통에서 떨어져서도 몸통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이를 중앙무대에 연결해 실시간보도를 하면서 몸통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공감대를 유지해주는 양방면의 대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12월 3일 새누리당집회는 광화문행사 2시간 전에 이루어졌는데 여의도 인근에 17개 중대가 배치됐다. 원래 새누리당사 담당 중대는 1개중대 뿐이었

다. 2시간이면 여의도배치병력을 청와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한편 12월 9일 의회탄핵소추안가결일 전농의 전봉준투쟁단은 트랙터를 몰고 정확히 2시경에 국회 앞에 도착했다. 민주노총대오가 국회 앞에 집결한 시간은 그로부터 20분 뒤였다. 그러나 경찰은 20분 내에 트랙터들을 모두 견인시켜 버렸다. 2시 20분이 되면 인파에 밀려 경찰은 시위대 안으로 도저히 진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파가 몰리기 전 신속하게 트랙터들을 격리시킨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사례였다. 조사의 복산 전술은 본대와 단 10분도 차이가 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 ㄷ. 성동격서(질서강제적)

성동격서는 기동전이다. 청와대에 병력이 고착되어 있지 않을 때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동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조직력을 요구하고 이 정도를 감당할 조직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결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취약한 전술을 내세우는 것은 상대를 유리하게 한다. 우리는 항상 상대의 약한 고리만을 집중해야 한다.

#### ㄹ. 점거(질서창조적)

정치와 항쟁의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가 공간의 지배, 즉 점유, 점거에 있다. 국제정치용어를 비유적으로 끌어오면 이는 공간의 '점령'이다. 월가점령시위가 대표적이다. 도시공간의 점유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 및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와 투쟁이라는 행위를 통해 시작된다. 즉 시위는 도시공간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권력투쟁이며, "시위라는 행위는 근대적 도시공간을 표상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sup>37)</sup>

공간적 점거는 거리에서 건물로 전개된다. 권력기관건물의 점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요청, 명령, 질서의 단계를 밟아간다. 요청단계에서 집단민원, 장관집단면담과 같은 합법적, 비폭력적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세종정부청사의 농림부를 에워싸고 점거하며, 점거가 안정화되면 관할단계로 이행한다. 농림부강당에 농민단체와 농민전문가, 공무원, 장관등이 대 토론회를 열어 국정농단의 부역자와 부역정책을 찾아내고 바로잡고, 농정의 개혁방향을 잡고 정책안을 제출하여 개혁을 요청한다. 이 기구를 농업위원회라고 해보자.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농업위원회가 명령한다. 향후 행정에서 농업위원회의 의견과 건의가 관철되는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새로운 행정체제를 만든다. 이 역시 청와대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전국이 권력공백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 언제나 중요전제이다.

이같은 공백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박근혜 개인의 퇴진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체제 전체에 대한 변경이 실질적인 항쟁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점령운동으로 전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검찰청, 국회, 새누리당사, 전경련, 세종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서울정부청사, 대전정부청사, 감사원, 국정원등 각 기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단계 에워싸기, 2단계 1시간점령, 3단계 1일점령식으로 수위를 높여간다. 경찰력은 이들 시위에 대응하려

37) 정호기, 「지배와 저항, 그리고 도시공간의 사회사-총장로, 금남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p.246; 정희선, 「서울시 집회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 1990~2003년」, 『국토지리학회지』38권4호, (2004), p.450

면 청와대경호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그때 청와대로 다시 진출하여 박근혜퇴진을 압박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민중의 항쟁력이 공권력 특히 경찰력을 이미 압도했기 때문이다. 항쟁의 2단계인 명령자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혁명은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항쟁은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다. 항쟁의 형식은 바로 항쟁의 본질을 충족하는 내용의 구조이다. 내용은 상호작용하며 우연에서 필연으로, 필연에서 인과로 진화한다. 형식 또한 우연하고 일시적인 공간지배에서 법적이고 필연적인 지배로 자기 형식을 만들어간다. 그리하여 공간의 변화는 인민의 비지배 욕구라는 내용의 변화를 체현한다. 청와대 주변에 대한 공간적 지배가 항쟁단계의 목적이라면,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거점공간에 대한 지배는 혁명단계의 목적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항쟁과 혁명의 물질적 형식은 ‘공간의 지배’이다.

## 2. 시간의 지배

항쟁이 시작되는 순간 시간은 객관적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민중의 준비정도와 정세의 발전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독특한 시간을 만들어낸다. 10년 동안 일어날 일이 1주일 만에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 기적의 시간을 나는 ‘민중의 시간’이라고 명명한다.

아담스미스는 ‘민중의 시간’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직관해냈다. 그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과격한 이유를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1주일을 버틸 사람이 많지 않고, 한 달간을 버틸 사람은 거의 없고, 한 해 동안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다...노동자들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때로는 매우 놀라운 폭행과 폭력을 사용한다. 그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처럼 온갖 황당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고용주를 위협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굶어죽기 때문이다.’<sup>38)</sup>

항쟁의 공간전략과 결합하여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하나를 도출할 수 있다. 모든 혁신적 희생적 시도는 항쟁의 대오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부터 기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농의 1차 농기계진격투쟁은 민중총궐기와 단 하루의 차이밖에 없었으나 가차없이 차단당했다. 그것은 단순한 원리였다. 다음날엔 청와대경호구역경비 때문에 농기계진격투쟁을 막을 여력이 부족했겠지만 전날은 전농만을 상대하면 되었기에 여력이 충분했던 것이다. 경찰은 민중이 약해지거나 고립되면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항쟁시 평화는 민중의 힘이 강할 때만 유지되는 평화였다.

민중의 시간은 현명한 지도부에 의해 조절된다. 고도의 긴장과 열정을 불어넣어 힘을 집중시킬 때와 충분한 휴식과 정비를 취하여 힘을 보존시킬 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레닌은 혁명 하루 전에 혁명지도부에 나타났다. 하루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레닌은 마치 한계를 모르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도의 열정과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한편 전농준은 농번기를 피해 농한기에 봉기했다. 민중의 준비정도와 여건은 농한기 봉기를 당연히 요청한 것이다. 민중의 시간을 잘 이해하고 조직하는 지도부와 함께 할 때 승리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개념으로부터 조직력의 중요한 척도가 등장한다. 템포이다. 항쟁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정치적 균열선이 나타난다. 이러한 균열선으로서의 템포는

38) A. Smith, *The Wealth of Nation*, 김수행 역, 『국부론』상, (서울: 비봉출판사, 2007개정초판1쇄), pp. 87-88

항쟁이 더 급박하고 더 예민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현실화된다. 템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민중의 시간을 정확히 간파한 지도자에 의해 템포는 완성된다. 리듬을 탈 때 상대의 틈을 찾아 능란하게 치고 빠지며, 민중의 역량을 보존하고 집중할 수 있다.

### 3. 권리지배 (권리에 의한 지배)

#### ㄱ. 권력배제

권리지배는 우선 권력배제를 의미한다. 5.18광주에선 항쟁기간 시민들의 자치기구가 꾸려졌다.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파리 코뮌이 수립되었다. 이들은 공권력을 배제하면서 평등을 지향하는 권리에 입각하여 수립된 질서였다. 항쟁주체의 조직력은 권력주체들에 대한 지배력으로 표현된다. 항쟁의 성공여부는 권력중심의 관계에서 권리중심의 관계로, 권력의 지배에서 권리의 지배로 얼마나 이행했는가에 달려 있다. 권리의 지배란 소수 권력자에 대한 다수인민의 지배이다. 압도적 다수에 의한 권리의 지배는 권력에 대한 평화적 강제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 이 또한 촛불항쟁에서 체득한 교훈이다. 프랑스 내전기간동안 권리의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간의 지배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되자 권리의 지배도 실패했다. 권력과의 생사를 건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권리는 관념적으로 현실에서 물러나 이상향을 건설할 수 없다. 국가권력의 폐지를 위한 조건에 대한 고려도 없이 즉각적 국가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권리지배를 최대한 차단, 무력화시키고 권리의 주체들을 보호하며 권리지배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권리지배의 권력화라는 고민이 대두된다.

#### ㄴ. 권리지배의 권력화

권력을 배제할 수 있어야 권력과 경쟁할 수도 있다. 권력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은 권리와 권력이 상호 의존하는 상황이다. 권리지배가 일거에 달성되지 않는 한 권력과의 공존은 불가피하다. 이는 지배권력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항쟁 주체내에서도 권리지배와 권력지배의 공존과 경쟁이 모색된다. 남아공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넘어서는 권력과 권리 간의 민주적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2005년에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세상의 민주적 권력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였다.<sup>39)</sup> 스탈린은 ‘소비에트정권은 파리코뮌의 발전이며 완성이다.’<sup>40)</sup>라고 하며, 권리

39)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5

40) 이는 1924년 레닌 사후 스페르들로프대학에서 행한 강연록 「레닌주의의 기초」에 등장한다. 이어지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정권의 본질은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압박받던 그 계급들의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조직들이 지금은 「전 국가권력, 전국가기구의 항구적이며 유일한 토대」로 되었다는데 있으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공화국에 있어서도」 법률상으로는 동등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무수한 수단과 휴계로 말미암아 정치생활에의 참가와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의 향유로부터 제외되었던 바로 그 대중이 지금은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관리에 대한 항구적이고 확실한 더구나 결정적인 참가에 인입된다」는데 있다.(레닌, 24권, p.13참조) 이런 까닭에 낡은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의회형

지배의 완성모델이 권력지배임을 주장한다. 권리지배를 주장하던 항쟁세력들이 권력지배와 공존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권리주체들이 왜 권력의 강제를 채택하는가에 대하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9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귀족의 욕구에는 ‘명령하려는 것’과 ‘지배하려는 것’의 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인민들의 욕구는 ‘명령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sup>41)</sup> 즉 인민들의 기질(umori)은 지배를 거부할 수 있다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명령, 즉 권력의 강제에 대한 자발적동의, 자발적위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소외된 권리의 은폐수단으로서 ‘자발적동의’를 사용하는 것과 항쟁주체들의 동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정적인 문제는 지도자이다. 지도자들의 사익에 따른 비정상적인 행동은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는 결코 ‘귀족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에게 ‘명령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권력의 명령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sup>42)</sup> 자본주의권력은 권리의 소외를 권력의 근거로 삼는데 비해 항쟁권력은 소외된 권리의 극복을 권력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또한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얼마나 철저히 권리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하는가에 의해 권리주체인 인민은 명령과 강제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권리지배의 권력화는 ‘인민의 권리를 배제시키거나 분리하여, 국가나 사회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체제’를 ‘인민의 권리체제’로 전화하는 구조 혹은 인민의 권리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베네수엘라 헌법 제89조 제1항은 인민의 권리를 현실의 권력으로 변화시킨 경우이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어떠한 법률도 노동자의 권리와 급부에 관하여 그 불가침성과 향상성을 손상시키는 조항을 제정할 수 없다.”<sup>43)</sup>고 규정하였다. 베네수엘라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의 각종 권리들을 권력으로 실체화하였다.<sup>44)</sup> 베네수엘라의 국(공)영 기업에 대한 인민의 감독을 실질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시민사회권력이 헌법 제273조로 보장되었다. “시민사회권력은 인민의 수호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구성되는 공화국 윤리위원회이고, 이 권력체는 국(공)영 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 281조 2항은 공화국 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과제까지 제시하였다. “시민사회권력은 국가의 공공사업이 적절히 기능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공공재화를 생산·관리하고 공급하는 행정의 업무가 독단 행위, 권력 남용, 과실 등으로 인민의 합법적이며 집합적, 광범위적인 모든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남아공은 대표적인 것이 ‘국가권력의 4권분립’이다. 남아공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시민사회권을 보장하였다. 시민사회권력은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구성되었다. ‘공공호민관’(Public Protector), ‘국가회계감사관’(Auditor-General), ‘인권위원회’, ‘문화·종교·언어 공동체 보호발전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선거위원회’는 남아공 인민의 사회적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권력의 기구이다.<sup>45)</sup> 모든 국가기구와 그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

---

태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조직의 새로운 형태인 것이다.’(이.웨.쓰팔린, 『이.웨.쓰팔린 저작집』제6권(1924), (모스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 1955), p.166) \*이 번역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북한서적인데 북한출판사에 대한 서지가 없는 점이 특이하다.

41) 광준혁, 『지배와 비지배』, (서울: 민음사, 2013), p.188

42) 광준혁, 『지배와 비지배』, (서울: 민음사, 2013), p.197

43) 베네수엘라, 헌법 제89조 1항, 2009(세계법제정보센터)

44)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7

45)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9

며,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그 예산안을 토대로 국가의 예산을 확정한다. 남아공의 시민사회권력은 모든 국가기구에 인민의 권리를 투영하기 위한 진지이자, 인민의 권리를 권력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국가가 소멸되지 않거나, 지배-피지배의 통치관계가 지속되는 한, '권리 중심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 중심의 관계' 속에 인민의 권리를 투영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국가에 대한 인민의 지배관계로 변화시키며 국가소멸의 조건을 마련해가는 것이다. 만약을 가정하면, 권리지배의 완성은 국가소멸은 물론 권리자체의 소멸을 의미할 것이다.

#### ㄷ. 권리의 소멸

국가가 소멸되고, 사적소유가 없어지고 공동소유가 전면화되어도, 비록 개인적이지만 개별 노동능력 차이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은 지속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적소유가 철폐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도 부르주아적 권리인 평등한 권리는 잔존한다. 일한 만큼 분배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는 노동량에 대해 상품교환의 원리인 등가교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평등의 요체는 평등한 척도인 노동으로 측정된다는 데 있고...권리의 요체는 본성상, 오직 동일한 척도의 적용에만 있을 수 있다."<sup>46)</sup> 이처럼 능력만큼 분배받는 노동의 등가교환원리는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는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들어서 사멸한다. 상품의 이중성에서 교환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상품규정 자체가 소멸하듯이 권리의 이중성도 권리를 교환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소멸한다. 그러나 평등한 권리가 부르주아적 권리라는 것은 부르주아국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낮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공산주의는 국가가 소멸한 상태를 전제한다. 이는 낮은 단계 공산주의에 부르주아적 잔재가 남아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혁명 전 레닌의 글을 보자.

어떤 자본가들과 계급들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국가도 사멸하게 되며 그 결과 어떤 계급도 억압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질적인 불평등이 인정되는 한 국가는 완전히 사멸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필요하다.<sup>47)</sup>

첫 번째 문장은 맞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마르크스의 「고타강령초안비판」에 대한 오독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도 부르주아적 권리가 잔존한다는 것을 부르주아국가가 잔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 공산주의 역시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국가소멸로서만 도래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 여전히 국가가 존재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오독은 러시아혁명이후 국가가 잔존하는 공산주의라는 인식하에 전시공산주의라 불리는 무리한 공산주의정책의 추진을 초래했다. 물론 1921년 레닌은 이러한 오류를 명확히 반성하고 바로 잡았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명확히 분리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행기, 과도기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1921년 이후에도 혼동은 계속된다.<sup>48)</sup>

46) K. Marx, 「고타강령초안 비판」(1875),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1), pp.376-377

47) V.I. 레닌, 김영철 역,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1988), pp.117-118

48) 예를들면 1922년 3월 러시아공산당중앙위 정치보고에서 레닌은 '이행기란 타파되었지만 아직 절멸되지 않는 자본주의와 이미 탄생은 하였으나 아직은 약한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의 시기'라고 정의

오히려 혼동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은 스탈린이다. “공산주의 시대에 가서도 역시 우리에게 국가가 보존되겠는가? 그렇다...만약 자본주의적 포위가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포위하게 되면 물론 국가는 보존되지도 않고 사멸될 것이다.”<sup>49)</sup> 일국적 공산주의란 불가능하며 자본주의의 포위 하에서 일국혁명은 일국에서 고립된 지역적 항쟁세력의 신세와 다를 바 없다. 프루동의 화폐 없는 사회 실험이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선 공상이었듯이, 권리의 지배도 제국주의권력의 포위 속에선 공상이다. 레닌이 혁명 직후 화폐를 폐지하고 결재권으로 대신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물신주의를 감수하며 화폐를 부활시킨 것처럼, 국가권력물신주의를 감수하면서도 국가권력을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자본주의포위 때문이었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국가는 사멸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 이것은 모든 나라 또는 대다수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부르주아적 권리의 시원은 자본주의생산양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세계적인 것이다. 국가를 전제로 한 권리지배의 권력화가 세계적 범위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고타강령초안비판」에서의 마르크스의 ‘부르주아적 권리 잔존’ 논리에 따르면 권리의 소멸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폐지, 국가의 소멸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 마치며

국가는 권력의 물신화이며 이는 권리의 이중성 속에 내포된 모순으로부터 시작된다. 권리의 이중성이 권리의 소외로 나아가느냐, 권리의 단결로 나아가느냐에 의해 국가와 항쟁의 길이 나뉜다.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국가로서의 시민사회와 국가로서의 국가 전체가 변혁되지 않는 이상 부분적인 개조로는 국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본주의적 교환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힘이며 지배권력을 생산,축적시키는 원천이라는 사실, 따라서 나 자신도 그 공모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즉 나의 밖에 저항할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성자체가 국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각된 자유의지로서의 선택만이 권력지배를 배제하고 권리지배를 완성시켜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게 나라냐’라고 묻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 이게 나라다.

---

한다. ‘약한 공산주의’가 낮은 단계 공산주의라면 레닌은 이행기를 공산주의초기단계까지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V. I. Lenin,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Bosheviks)(1922. 3. 27).”*Collected Works*. vol.33,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5), p.263참조)

49) 스탈린, 「소련공산당(볼셰비키)제18차 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39); V.I. 레닌, 김영철 역, 「국가론-부록」,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1988), p.199